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1나540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등]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1나54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19가단509417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장경수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국제협력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박상능, 박진석, 신종균, 정호선, 이하영

변론종결 2021. 5. 27.

판결선고 2021. 6. 24.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19가단5094171 판결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8,802,07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4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2020. 11. 2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파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각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제1심 법원이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이 사건 계약상의 대금 청구권을 판단하여 변론주의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제1심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납품한 기자재 중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 상당액을 피고가 부당이득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하고(처분권주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법원이 판단할 수는 없지만(변론주의), 법원은 청구의 객관적 실체가 동일하다고 보이는 한 청구원인으로 주장된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하여 정당한 법률해석을 하여 판결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므826, 833 판결,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1992. 2. 14. 선고 91다31494 판결 취지 등 참조), 원고가 동일한 금액을 구하면서 그 법리 구성을 계약상 청구권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당이득으로 할 것인지는 결국 계약 해지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 판단의 문제인 점, 원고는 미지급 대금 부분은 해지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보았으나 제1심은 해지의 효력은 장래에 대하여만 있으므로 이미 납품된 부분은 비록 대금이 미지급 중이라도 해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어 법리 판단만을 달리한 점, 이러한 제1심의 판단에 있어 원고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다르게 본 것은 없는 점, 결국 제1심이 부당이득이 아닌 계약상 의무로 판단하였더라도,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방하던 동일한 객관적 요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적 평가만을 다르게 판단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와 피고가 예상하기 어려운 새로운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요건 사실에 대한 실질적 공방도 모두 이루어진 이상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이 사건 계약상의 대금 청구권으로 선택하여 판단한 것을 변론주의위반으로 보기 어렵다(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이 사건 계약상 대금 청구권으로 선택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서 추가로 소멸시효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선택하는 것이 상당한 이상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형, 판사 구광현, 판사 최호식